## 경상북도체육회 대외협력관 운영에 관한 내규

제정 2023. 12. 04.

- 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경상북도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가 체육회와 시군체육회, 도종목단체간의 대외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'경상북도체육회 대외 협력관'(이하 '협력관'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역할)** 협력관은 경북체육 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활동한다.
  - 1. 시군체육회, 도종목단체와의 협력 및 현안조정 지원
  - 2. 회원단체 의견 청취 및 업무자문
  - 3. 체육회 발전 방안 자문
  - 4.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
- 제3조(임용방법) 협력관은 1명으로 유급일 경우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며, 무급일 경우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- 제4조(임기) 협력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
- 제5조(활동실적 관리 등) ① '협력관 활동실적 관리대장'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협력관은 제2조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협력관이 무급일 경우 '협력관 활동실적 관리대장'을 관리 하지 아니한다.
- 제6조(경비지원) 회장은 협력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관련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 경비를 지원한다.

다만, 무급일 경우는 지워하지 아니한다.

- 제7조(보안 및 청렴 서약)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
  - 2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
  - 3. 체육회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른 직무의 수행 금지
  - 4.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권 남용 금지
  - 5.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등
- **제8조(임용해지)** 제4조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자문관의 임용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협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
  - 2. 협력관으로서 품의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
  - 3. 제7조에 따른 서약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
  - 4. 체육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 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파단될 경우

## 부 칙(2023. 12. 04.)

(시행일) 이 내규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협력관 활동 실적 관리대장

협력관 성명	일자	활동 방식 (자문, 회의 등)	활동 내용	비고

## 보안 및 청렴 서약서

본인은 년 월 일부터 경상북도체육회 대외협력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.

- 1.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
- 2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
- 3. 경상북도체육회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른 직무의 수행 금지
- 4.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권 남용 금지
- 5.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등

년 월 일

대외협력관 (서명 또는 인)

경상북도체육회장 귀하